여수시 공고 제2025-2220호 **[문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

2025년 여수시 노후차 조기폐차 3차 지원사업 공고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건강유해성이 큰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노후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23일

여 수 시 장

1 사업 개요

○ 접수기간 : **2025. 8. 11.(월) ~ 8. 29.(금)**

※ 선착순 접수 아니며 일괄 접수 마감 후 9월 중순 대상자 선정 결과 발표

○ 사 업 량 : 약 712대

※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으로 보조금 차등 지급되어 지원 대수 변동 가능

○ 지원대상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 포함)
- **2009.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2004.12.31.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 배출가스등급 조회: 홈페이지(https://www.mecar.or.kr), 콜센터(1833-7435)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자동차로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5 기준에 따른 자동차의 정의를 따름)

***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로 '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또는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을 말함

○ 지원금액 : 차종·연식·형식 등에 따라 상한액 내 차등 지원

○ 접수방법 : 인터넷, 등기우편, 방문

① 인터넷 접수

-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홈페이지 https://www.mecar.or.kr/

※ 인터넷 신청방법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홈페이지 → 회원가입 → 로그인 → [저공해조치신청] 클릭 → 약관동의 → 정보입력(저공해조치방법 - 조기폐차 선택) → 저공해신청 완료

② 등기우편 접수

-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접수 8. 29.(금) 우편 소인 찍힌 것까지 인정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우)14055

③ 방문 접수 **※ 인터넷 사용 취약자 대상**

- 여수시 시청동1길 23(구. 보건소) 1층 기후생태과 기후대기관리팀

(월~금 10:00 - 16: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지원기준 : 1인당 1대 우선 선정 / 이후 다대 신청 차량 선정

(우선순위에 따른 대상자 선정 / 선착순 선정 아님)

※ 위·수탁(지입) 차량은 법인의 위임받은 후 개인으로 접수 가능(위수탁계약서 및 위임장 등 서류 제출 필수)

○ 선정통보 : **2025. 9월 중순**

- 선정 통지서 휴대전화(카카오톡 및 문자) 발송 후 안내문 우편 발송 예정

-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관련 문의: 1577-7121

※ 선정통보일 이전 성능검사 및 폐차 시 보조금 지급 불가

2 지원대상

○ 대상 차량

① 배출가스 **4등급 또는 5등급** 경유 자동차(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 포함)

② 2009. 8. 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③ Tier-1 이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로 **2004년 이전 제작**된 것

※ 다만, 75kw 이상 130kw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

※ 배출가스 4·5등급 차량확인방법

(인터넷사이트) 포털사이트(다음, 네이버 등)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www.mecar.or.kr) → 소유차량 등급조회 → 휴대폰 본인인증 → 등급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 여부 확인

(환경부콜센터) 1833-7435

[문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

○ 지원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

① **(등록기간)** 접수마감일 기준 역산하여 **차량의 사용본거지가 여수시에 연속하여 6개월 이상 등록**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차량인 경우 사업본거지가 여수시

② **(관능검사)**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 또는 굴착기는「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인정

③ **(차량상태) 성능·상태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 자동차 및 건설기계**

④ 정부·자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도로용 3종 포함) 및 건설기계

- 다만,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은 적용 제외

⑤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건설기계, 소상공인 추가 보조금 대상자**는 조기폐차 신청일로부터 역산 **6개월 이상 소유한 자**

▶ **지원제외**

- 수출말소, 차령초과말소, 직권말소, 사고 등으로 인해 정상 운행이 불가능한 폐차상태의 차량
- **대상자 선정통보 전 폐차한 경우**
- 지방세, 세외수입(과태료 등),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이 있는 경우
- 차량의 용도가 관용인 경우

○ 선정방법

- 1인당 1대 우선 선정 / 이후 다대 신청 차량 선정
- 동일한 등급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① 제작일자가 오래된 차량 또는 건설기계

② 택배차량, 어린이 통학차량, 총중량 3.5톤이상 차량

③ 저감장치 부착이 불가한 차량(5등급 해당),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사용하는 보철용・생업활동용 차량, 소상공인

*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 상이등급 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신체 장애등급 1~14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경도장애 이상 장애등급 판정

2 보조금 지원금액 및 지원율

가. 조기폐차 시 기본(폐차) 보조금 지원

○ (5등급) 폐차차량이 총중량 3.5톤 미만

- 승차정원 5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 폐차 차량기준가액의 100% 지원
- 그 외 자동차 : 폐차 차량기준가액의 100% 지원

○ (4등급) 폐차차량이 총중량 3.5톤 미만

- 승차정원 5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 폐차 차량기준가액의 50% 지원
- 그 외 자동차 : 폐차 차량기준가액의 70% 지원

○ (4등급, 5등급) 폐차차량이 총중량 3.5톤 이상

- 폐차 차량기준가액의 100% 지원

※ 폐차 차량기준가액: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당해연도 1분기 차량기준가액
보험개발원 홈페이지(https://www.kidi.or.kr/user/car/carprice.do)에서 조회 가능

나. 조기폐차 시 추가(구매) 보조금 지원

※ 폐차와 신차 차주가 동일해야 하며, 2024. 11. 1. 이후 **소유자 명의로 신규등록(중고차 명의이전 등록 포함)한 차**이며, 폐차할 차량보다는 이후에 소유한 차여야 함(등록일자는 등록원부로 확인함)

○ (5등급) 폐차차량이 총중량 3.5톤 미만

- 경유차를 제외한 차량을 신차(배출가스 1·2등급만 가능)로 구매 시 폐차 차량기준가액의 50% 지원

- 전기, 수소차량을 신차로 구매 시 50만 원 추가 지원(상한액 초과 불가)

※ 이륜차, 상품용(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차) 제외

○ **(4등급) 폐차차량이 총중량 3.5톤 미만**

- 경유차를 제외한 차량을 신차 또는 중고차(1·2등급만 가능)로 구매 시

  • 승차정원 5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 폐차 차량기준가액의 50% 지원

  • 그 외 자동차 : 폐차 차량기준가액의 30% 지원

- 전기, 수소차량을 신차 또는 중고로 구매 시 50만 원 추가 지원(상한액 초과 불가)

※ 이륜차, 상품용(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차) 제외

※ 중고차 구매시 **배출가스 2등급 중고차량은 2013.1.1.이후 제작된 자동차만 가능**

○ **폐차차량이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또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신차 구매 시)** 배출가스 1·2등급 3.5톤 이상 차량 또는 Euro6 이상 차량을 신차로 구매 시 폐차 차량기준가액의 200% 지원

- **(중고차 구매 시)** 배출가스 1·2등급 3.5톤 이상 차량 또는 2017. 10. 1. 이후 제작*된 **Euro 6 이상 차량**을 중고차로 구매 시 폐차 차량기준가액의 100% 지원

* 중고차 제작일자는 ①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제작연월일' 또는 ②자동차 제작사에 요청한 제작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자동차등록증상 최초등록일, 등록일자 등은 인정하지 않음

* 해당 제작연월일은 신청자가 중고차 구매 전 개별적으로 확인할 사항이며 이를 확인하지 않고 추가 지급 조건에 맞지 않은 차량 구매 후 보조금 청구 시 **보조금은 지급 불가**

- 3.5톤 이상 차량을 구매하여야 하며, **폐차하는 차량과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도로용 3종은 규격)이 같거나 작은 차량을 구매하여야 함**

(단, 20% 범위 이내 일부 증가한 경우 인정)

○ **신차인 지게차 또는 굴착기 구매 시** : 폐차 차량기준가액의 200% 지원

- 전동화 등 무공해 건설기계를 신차 구매 시 폐차 차량기준가액의 200% + 50만원 지원(상한액 초과 불가)

※ 이륜차, 상품용(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차) 제외

※ 지게차 또는 굴착기는 중고차 구매 시 추가 보조금 지원 제외

[문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

추가(구매)보조금 지원 불가

-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폐차 →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구매(추가지원 불가)
-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폐차 →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구매(추가지원 불가)
-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폐차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구매(추가지원 가능, 단 차량 조건 만족 시)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폐차 →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구매(추가지원 가능, 단 차량 조건 만족 시)
- 지게차 또는 굴착기 폐기 → 차량 또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 구매(추가지원 불가)
- 지게차 폐기 → 굴착기 구매 또는 굴착기 폐기→지게차 구매(추가지원 불가)

※ 신차구매에 따른 추가 보조금 지원 대상자는 **의무운행기간(2년)** 준수하여야함

※ 단, 조기폐차 신청 전 신차(건설기계 포함)·중고차를 구매하여 신규로 등록한 소유자는 **신차(건설기계 포함)·중고차 구매 당시 조기폐차 신청 대상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야 추가(구매) 보조금 신청 가능**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table>
<tr><th colspan="3" rowspan="2">구 분</th><th rowspan="2">상한액
(기본+추가, 만원)</th><th colspan="3">지원율</th></tr>
<tr><th>기본(폐차)</th><th colspan="2">추가 지원(차량구매)</th></tr>
<tr><td rowspan="6">5등급
자동차</td><td colspan="2">①총중량 3.5톤 미만</td><td>300</td><td>100%</td><td>50%
(신차)</td><td>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신차)</td></tr>
<tr><td rowspan="4">②총중량
3.5톤 이상</td><td>3,500cc 이하</td><td>440</td><td rowspan="4">100%</td><td colspan="2" rowspan="4">200%(신차)

100%(중고차)</td></tr>
<tr><td>3,500cc 초과 5,500cc 이하</td><td>750</td></tr>
<tr><td>5,500cc 초과 7,500cc 이하</td><td>1,100</td></tr>
<tr><td>7,500cc 초과</td><td>3,000</td></tr>
<tr><td colspan="2">③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td><td>4,000</td></tr>
<tr><td rowspan="6">4등급
자동차</td><td rowspan="2">①총중량
3.5톤 미만</td><td>승용
(5인승 이하)</td><td>800</td><td>50%</td><td>50%</td><td rowspan="2">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td></tr>
<tr><td>그 외</td><td>800</td><td>70%</td><td>30%</td></tr>
<tr><td rowspan="4">②총중량
3.5톤 이상</td><td>3,500cc 이하</td><td>720</td><td rowspan="4">100%</td><td colspan="2" rowspan="4">200%(신차)

100%(중고차)</td></tr>
<tr><td>3,500cc 초과 5,500cc 이하</td><td>1,600</td></tr>
<tr><td>5,500cc 초과 7,500cc 이하</td><td>2,400</td></tr>
<tr><td>7,500cc 초과</td><td>7,800</td></tr>
<tr><td colspan="2">③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td><td>10,000</td></tr>
</table>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지게차, 굴착기) >

<table>
<tr><th rowspan="2">구 분</th><th rowspan="2">총중량</th><th rowspan="2">상한액
(기본+추가, 만원)</th><th colspan="2">지원율</th></tr>
<tr><th>기본(폐차)</th><th>추가 지원(차량구매)</th></tr>
<tr><td rowspan="3">굴착기</td><td>16톤 미만</td><td>1,650</td><td rowspan="6">100%</td><td rowspan="6">200%(신차)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td></tr>
<tr><td>16톤 이상 33톤 미만</td><td>2,700</td></tr>
<tr><td>33톤 이상</td><td>7,900</td></tr>
<tr><td rowspan="3">지게차</td><td>9톤 미만</td><td>1,050</td></tr>
<tr><td>9톤 이상 18톤 미만</td><td>3,400</td></tr>
<tr><td>18톤 이상</td><td>12,000</td></tr>
</table>

[문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

다. 그 외 보조금 산정 시 인정 조건

○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5등급 차량(총중량 3.5톤 미만) 중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으로 시스템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기본 보조금에 화물·특수차량 **100만원**, 그 외 차량 **60만원** 추가지원(상한액 초과 불가) 다만, 매연 과다, 하부 부식 등 관리 소홀의 사유로 부착 불가한 경우는 제외

○ **(저소득층 추가지원) 기본보조금에 정액 100만원 추가지원(상한액 범위 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며 신청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제출(복지로 또는 지자체 발급)

※ 공동명의인 경우 명의자 모두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경우만 인정 가능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준용하여 2대/년으로 한정

○ **(소상공인 추가지원) 기본보조금에 정액 100만원 추가지원(상한액 범위 내)**

- 소상공인의 지원 대수는 업종별 최대 상시근로자 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9대/년, 그 외 업종은 4대/년으로 한정

-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은 중복지원 불가**
-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에서 발급 (국번없이 ☎ 1357)
- 공동명의인 경우 1인만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하되, 이 경우 나머지 공동명의 소유자에 대하여도 업종별 소상공인 연간 지원 대수와 한도를 적용

※ 소상공인 추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차량 소유자(공동명의 포함)는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 차량을 연속으로 소유**한 경우 인정

○ **(대상차량확인 비용)** 사업대상자 확정 이후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확인) 비용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시 상한액과 별도로 14,000원/대 지원(현장 확인 검사 수수료가 14,000원 미만인 경우 실비 지급하며, 수수료를 납부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함)

3 지원절차 및 내용

[문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

지원신청서 제출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	성능·상태검사 및 폐차·말소등록 후 청구서 제출	신차등록 및 청구서 제출
차량소유자 → 여수시,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여수시,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 → 여수시 (통보일부터 2개월 이내)	지원대상자 → 여수시 (통보일부터 4개월 이내)

※ 대상자 선정 통보일 이전 폐차한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폐차 전 성능검사 받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1 신청서 접수 [8. 11. ~ 8. 29.]

○ 신청서 제출 시 구비서류(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공통 서류	1. 조기폐차(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2. 자동차등록증(사본) 또는 건설기계등록증(사본) 1부 3. ① 개인: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사본) 1부 ② 법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사본) 1부
추가 서류	**1. [공동명의]** – 공동명의자 신분증 각 1부 **2. [지입차]** – 위 · 수탁 계약서 1부 – 법인사업자등록증 1부 –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사본) 1부 **3. [추가지원 적용대상자]** – 소상공인확인서 1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또는 증빙서류) ※ [소기업(소상공인)]표기만 인정 ※ 신청일이 중소기업확인서 유효기간에 포함되어야 인정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1부** **–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 → 장치제작사가 발행하는 확인서 첨부 – 도로용3종 건설기계 – 배출허용기준 증빙서류(제작사에 요청) **※ 신청 기간 내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한 차량만 인정**

[문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

2 조기폐차 대상자 선정 및 확인서 교부

○ 대상자 선정 및 통보예정일: 2025년 9월 중순

※ (개인)신청자 명의 또는 (법인)대표자 명의 휴대전화로 전자고지(카카오톡 또는 문자) 후 안내문 우편 발송 예정

-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필요시 별도 문의: 1577-7121

3 성능·상태점검 및 폐차 (대상자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

가. 조기폐차 대상자 선정 통보일 이후 성능검사를 현장 검사 또는 온라인 검사로 실시하여 **정상가동** 판정 후 폐차하여야 함

- 주요 부품에 정비요 또는 불량이 체크되었을 경우 특기사항 및 점검자의 의견란에 차량이 정상 운행 가능하다는 정비사의 의견이 있어야 함

나. 건설기계는 공업사 또는 건설기계 검사소에서 검사 실시

다. 현장 검사: 관내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업체(성능상태 기록부 발행)

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유)그린웨이자동차공업사	여수시 봉계4길 7(봉계동)	682-8113
(주)한국지엠여수서비스센터	여수시 주삼덕양로 199(주삼동)	685-8155
남여수기아서비스	여수시 소라면 소호관기로 143	692-8285

※ 타지역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업체 기록부도 제출 가능

라. 온라인 검사

1) 차주가 차량가동 동영상을 협회시스템에 등록하면 판독 후 협회에서 승인 및 차량상태 확인서 발급(특이사항 있을 시 현장확인)

※ 온라인 검사 매뉴얼 별첨/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 후 60일 이내 찍은 동영상만 인정**

※ **온라인 검사 문의사항 :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또는 031-689-3073**

2) 온라인 검사수수료: 14,000원(부가세 포함)

4 폐차 후 보조금 지급청구서 제출

가. 선정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 내 청구서 미제출 시 보조금 지급대상자에서 자동 취소됨

※ 수출, 멸실, 차령초과, 환가가치 차령초과 말소등록 차량과 확인서 교부일 전 폐차한 차량은 보조금 지급 제외

나. 관내 폐차장 현황

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동국자동차해체재활용산업	여수시 좌수영로 584(둔덕동)	654-3651
합동자동차해체재활용산업	여수시 만성로 228(만흥동)	662-7200
대성자동차해체재활용산업	여수시 상암로 275(호명동)	682-3366
호남자동차해체재활용산업	여수시 소라면 화양로 1762-10	692-3115

※ 타 지역 폐차장에서도 폐차 가능

다. **보조금 지급청구서 제출 시 구비서류**

- (공통) ①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② 자동차 말소 등록증 사본 1부
  ③ 보조금 수령용 구매자 본인(법인)명의 통장 사본 1부
  ④ 조기폐차 대상차량(상태검사) 확인서[별지 제5호 서식]
  ⑤ 조기폐차 대상차량(상태검사) 확인 수수료 납부 증빙서류 1부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온라인 검사 시 ④, ⑤ 서류 생략 가능
  ⑥ 자동차 소유자(법인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 (공동명의의 경우) 위임장 + 위임자 신분증 사본 +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 (지입차량의 경우) 위·수탁계약서 사본, 위임장, 인감증명서(법인), 신분증(개인)

5 신차(중고차) 구매 시 보조금 지급청구서 제출

가. 선정 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 내 청구서 미제출 시 보조금 지급대상자에서 자동 취소됨

나. 2024년 11월 1일 이후 등록한 차량에 대해 보조금 지급 가능(지급대상 확인 필요)하며, **폐차하는 차량과 신차구매 차량 소유자는 일치**하여야 함

※ 단, 조기폐차 신청 전 신차(건설기계 포함)·중고차를 구매하여 신규로 등록한 소유자는 **신차**(건설기계 포함)**·중고차 구매 당시 조기폐차 신청 대상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야 추가(구매) 보조금 신청 가능(차량 등록원부 및 건설기계 등록원부로 확인)

다. 추가 보조금 지급 대상자는 **의무운행기간(2년) 준수하여야 하며, 의무운행기간 추가 중복 지급 불가(동일차량 1회만 지원)**

※ 의무운행기간(2년)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 및 「특정경유자동차 등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보조금이 환수되나, 교통사고 및 도난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운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외 적용

라. 추가 보조금 지급청구서 제출 시 구비서류

①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별지 제3호 서식] (원본)

② 자동차 소유자(등록원부상 소유자) 명의 통장 사본

③ 신차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 등록증 사본

- (공동명의인 경우) 위임장,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원본)
- (지입차량인 경우) 위·수탁계약서 사본, 위임장, 인감증명서(법인), 신분증(개인)

6 보조금 지급

○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구비요건을 확인한 후 기준에 적합한 때에 보조금을 지급 (물량이 집중될 경우, 지급 기한 지연 가능)

가. 신차구매 추가지원 청구서 제출 시 예산이 소진되었을 경우, 다음 해 예산으로 지급

나. 보조금 지급청구 기간이 만료된 후 보조금 지급요청 등 청구내용을 번복할 수 없음

※ 폐차하는 차량에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이 되어 있을 경우 보조금 지급 제한

7 기타사항

가.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환경부 「’25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 규정 및 여수시 유권해석에 따름

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전액 환수

다. 지원대상자 선정 통보 전 말소 및 소유자 변경 시 보조금 지원 불가

[문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

※ 또한, 폐기 말소 후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할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4조(미등록 건설기계의 사용금지) 및 동법 제40조제1호(벌칙)에 따라 처벌 및 조기폐차 보조금 회수 조치될 수 있음

라. 상속이전 시에는 소유기간 6개월 이상 예외 적용 가능

마. 실제 운행 여부와 관계없이 폐차 말소 등록이 완료될 때까지는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미가입 시 과태료 부과될 수 있음.

바. 본 사업은 사업추진 여부, 지원금액 등이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사. 보조금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산정하므로 정확한 금액은 대상자 선정 후 통보 시 알 수 있음

아. 추가 문의사항: 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여수시청(1899-2012)으로 문의

※ 접수일 초반에는 통화량이 많아 전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공고내용 숙지 후 신청바랍니다.

붙임 1. [별지 제1호 서식] 조기폐차(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1부.
2. [별지 제2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1부.
3. [별지 제3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 지급 청구서 1부.
4. [별지 제4호 서식] 위임장
5. [별지 제5호 서식] 조기폐차 대상차량(차량상태) 확인서 1부.
5. [참고1] 인터넷 접수 방법 1부.
6. [참고2] 차량 등급 조회 확인 방법 1부.
7. [참고3] 자주하는 질문(참고용) 1부.

[문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

[별지 제 1호 서식] 조기폐차 지원신청시 제출(**소유자→한국자동차환경협회**)

작성 후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등기우편 송부

★등기우편 주소 : 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table>
<tr><td rowspan="4">소유자</td><td>①성 명(법인명)
(공동명의자 모두 기재)</td><td colspan="2"></td><td>②생년월일
(공동명의자는 명의자 모두의 생년월일 기재)</td><td></td></tr>
<tr><td colspan="5">※ 법인일 경우 '대표자' 정보 필수 기재(지급대상확인서 전자고지 발급시 필요)
□ 성명 : □ 휴대전화 :
□ 생년월일 : _____ - __ ****** (주민번호 뒷자리 첫 번째까지 기재)</td></tr>
<tr><td>③주소(사용본거지)</td><td colspan="4"></td></tr>
<tr><td>④휴대전화(차주 본인)</td><td colspan="2"></td><td>⑤FAX</td><td></td></tr>
<tr><td rowspan="7">대 상
자동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td><td>⑥차량번호</td><td colspan="2"></td><td>⑦차대번호</td><td></td></tr>
<tr><td rowspan="3">⑧□ 자동차
□ 건설기계</td><td colspan="4">□ 연식( )년 □ 배기량( )CC</td></tr>
<tr><td>정원(승합)</td><td>명</td><td>규격(건설기계 해당) ( )</td><td></td></tr>
<tr><td>중량(화물)</td><td colspan="3">□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td></tr>
<tr><td>⑨차명(건설기계명)</td><td colspan="2"></td><td>⑩형식</td><td></td></tr>
<tr><td>⑪배출가스 등급</td><td colspan="2">등급</td><td>⑫사용 연료</td><td></td></tr>
<tr><td>운행 상태</td><td>⑬정기·종합 검사 일자</td><td colspan="2"></td><td>⑭검사 기관</td><td></td></tr>
<tr><td colspan="2">환경개선부담금 대상 여부</td><td>□ 자동차</td><td colspan="3">□ 해당 □ 미해당
※ 해당 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폐차입고일 전일까지 발생) 납부를 완료하고 납부 증명서를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시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td></tr>
</table>

본인은 지자체 공고문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 차량을 조기폐차 하고자 하오니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신청서 제출 후 말소등록일 까지 소유자 변경 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 등을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환수 조치 및 처벌 받을 수 있음

※ 공동명의자로 소상공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공동명의자 모두의 ①성명, ②생년월일(법인일 경우 법인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등)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미기재(오기재)로 인한 책임은 소유자 본인에게 있음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지사)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장 귀하

<table>
<tr><td rowspan="4">구비서류</td><td colspan="2">신청인 제출서류</td><td>담당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td><td>수 수 료</td></tr>
<tr><td>개인</td><td>1.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1부.(공통, 공동명의자 모두)
2. 자동차 등록증 1부.
3.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도로용 3종, 지게차, 굴착기 해당)</td><td rowspan="3">1.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등록원부
2.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검사결과</td><td rowspan="3">없 음</td></tr>
<tr><td>법인</td><td>1.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공통)
2. 자동차 등록증 1부.
3.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도로용 3종, 지게차, 굴착기 해당)</td></tr>
<tr><td>해당자</td><td>1.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증명서 1부.
2. 배출허용기준 증빙서류 1부.(도로용 3종 건설기계 해당)
3. 차량 사양 증빙서류(제작사 또는 보험회사)</td></tr>
</table>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 서식] 폐차보조금 청구 시 제출

등급

확인번호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소유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휴대전화(차주 본인)		FAX		
신청 자동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차량번호		차대번호		
	□ 자동차 □ 건설기계	□ 연식( )년 □ 배기량( )CC			
		정원(승합) : 명	규격(건설기계) ( )		
		중량(화물) : □ 적재중량( )톤 □ 총중량( )톤			
	최초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년 월)			
	배출가스 등급		사용연료		
	보조금신청금액	원 (₩)			
	대상차량확인 보조금	원 (₩) ※ 금 일만사천원(₩ 14,000)으로 기입(단, 지자체에서 직접 대상차량확인을 실시하는 등 무료로 검사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오니 미기재, 현장 확인 검사 수수료가 14,000원 미만인 경우 실비 기재)			
폐차	말소 일자		폐차 업체명 및 소재지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 자동차	□ 해당 □ 미해당	납부일자 :	
폐차 후 신차 (중고차) 구매	신차(중고차) 구매 여부	□ 구매 또는 예정(추가 청구 예정) (□ 신차 □ 중고차)		□ 미구매 또는 구매 예정 없음	
	차량 등록일 또는 예정일	년 월 일 (년 월)			
	자동차(건설기계) 제원	□ 차량명(건설기계명) : □ 차량연료 : □ 연식( )년			

위와 같이 차량을 조기폐차한 후 해당내역에 대해 확인하고 신고하니, 조기폐차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서류 등을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보조금 환수 조치 및 처벌 받을 수 있으며, 지자체 또는 절차대행자가 검토하여 소상공인 또는 저소득층 서류의 진위 여부와 대수 초과 등이 확인 될 경우 보조금 재산정 및 환수될 수 있음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지사) 귀하 **※ 서명 인정됨(단, 법인은 날인)**

<첨부서류>

1. 자동차 말소 등록증 또는 건설기계 말소 등록증(원본 또는 사본)
2.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3.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차량상태확인)서 (정상가동판정 필수)
4.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차량상태확인) 검사수수료 증빙서류 1부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실시한 온라인 대상차량 확인을 받은 차량은 미제출
   ※ 현장확인검사 차량은 수수료를 납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보조금(14,000원) 지원 불가(추후 번복 불가)
5.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6.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해당자에 한함)
7. 위임장,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공동명의자에 한함)

[별지 제3호 서식]추가보조금(차량구매) 청구시 제출

등급

<table>
<tr><td>확인번호</td><td colspan="5">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td></tr>
<tr><td rowspan="3">소유자</td><td>성 명</td><td></td><td>생년월일</td><td colspan="2"></td></tr>
<tr><td>주 소</td><td colspan="4">※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상 주소 기재(주소 오기재시 서류 검토 지연)</td></tr>
<tr><td>휴대전화(차주 본인)</td><td></td><td>FAX</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7">신규
(중고차
포함)
구매
차량
정보
(지게차
또는
굴착기)</td><td>차량번호</td><td></td><td>차대번호</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3">자동차(건설기계)
제원</td><td colspan="4">□연식( )년 □ 배기량( )CC □ 용도: ( )</td></tr>
<tr><td colspan="4">□차명 : □ 정원(승합) : 명</td></tr>
<tr><td colspan="4">□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규격(건설기계) ( )</td></tr>
<tr><td>최초등록일자(차령)</td><td colspan="4">년 월 일 (년 월)</td></tr>
<tr><td>등록일자(명의변경일)</td><td colspan="2">년 월 일</td><td>배출가스 등급</td><td></td></tr>
<tr><td>제작일자</td><td colspan="2">년 월 일</td><td>사용연료</td><td></td></tr>
<tr><td>추가
보조금신청금액</td><td>□ 신차</td><td>□ 중고차</td><td colspan="2">원 (₩)</td></tr>
<tr><td rowspan="2">폐차 관련</td><td>차량번호</td><td colspan="2"></td><td>폐차 업체명 및
소재지</td><td></td></tr>
<tr><td>말소 일자</td><td colspan="2"></td><td colspan="2"></td></tr>
</table>

위 차량을 조기폐차한 후 위와 같이 차량구매 내역에 대해 확인하고(추후 번복 불가) 신고하니, 조기폐차에 따른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금법 및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신청하거나 추가 지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보조금 지급 이후 포함) 보조금 수령자로부터 환수 조치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지사) 귀하 **※ 서명 인정됨(단, 법인은 날인)**

※ 첨부서류

1.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 등록증(제10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2.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보조금 지급청구서에 첨부된 통장 계좌로 갈음)

[별지 제4호 서식] 차량소유주가 2인 이상인 경우 지급 청구서 제출 시 필수 서류

위 임 장

(공동명의 또는 지입차량인 경우)

수 임 자 (신청자)	주 소		
	성 명	(인)	
	생 년 월 일		
위 임 자	주 소		
	성 명	(인감도장)	
	생 년 월 일		
대상차량정보	구 분	자동차번호	자동차명
	폐차대상 (노후경유차)		

상기 위임자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신청 및 수령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붙임 :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2025년 월 일

위 임 자 : (인감도장)

※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첨부 시 서명

※ 차량구매 추가지원금 대상차량도 위 위임장으로 일괄 갈음

여 수 시 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대상선정 이후 성능검사시 발급(**점검업체 또는 협회 → 소유자**)

<table>
<tr><td>확인번호</td><td colspan="4">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차량상태확인)서</td><td>□ 온라인
□ 현장</td></tr>
<tr><td rowspan="3">소유자</td><td>성 명</td><td></td><td>생년월일</td><td colspan="2"></td></tr>
<tr><td>주 소</td><td colspan="4"></td></tr>
<tr><td>휴대전화(차주 본인)</td><td></td><td>FAX</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4">신 청
자동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td><td>차량번호</td><td></td><td>차대번호</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3">□ 자동차
□ 건설기계</td><td colspan="4">□연식(　　)년　　□배기량(　　)CC</td></tr>
<tr><td colspan="4">□차량명(건설기계명) :</td></tr>
<tr><td colspan="3">정원(승합) :　　명</td><td colspan="2">규격(건설기계) (　　)</td></tr>
<tr><td colspan="5">중량(화물) :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td></tr>
<tr><td rowspan="15">확
인
항
목</td><td>동일성
확인</td><td colspan="2">- 부착된 등록번호와 등록증상 일치</td><td rowspan="15">확
인
결
과</td><td>□ 일 치　□ 불일치
□ 식별불가</td></tr>
<tr><td>원동기</td><td colspan="2">- 원동기(시동)작동 여부</td><td>□ 가 능　□ 불 가</td></tr>
<tr><td>동력전달장치
(변속기포함)</td><td colspan="2">- 변속기의 작동 여부
- 변속 시 동력 전달 여부(전·후진)</td><td>□ 가 능　□ 불 가
□ 전진 또는 후진 불가</td></tr>
<tr><td>조 향</td><td colspan="2">- 정상 작동 여부</td><td>□ 가 능　□ 불 가</td></tr>
<tr><td>제 동</td><td colspan="2">- 제동 가능 여부</td><td>□ 가 능　□ 불 량</td></tr>
<tr><td rowspan="3">유압장치
(건설기계)</td><td colspan="2">- 유압유의 상태, 유압유 누출 여부</td><td>□ 양 호　□ 불 량
□ 단순 불량(유압유부족)</td></tr>
<tr><td colspan="2">- 각 작동부의 작동상태</td><td>□ 양 호　□ 불 량
□ 단순 불량</td></tr>
<tr><td colspan="2">- 각 작동부의 이상소음 여부</td><td>□ 양 호　□ 불 량
□ 단순 불량(소음)</td></tr>
<tr><td rowspan="5">그외 주요
부품</td><td>- 차제 외관 상태</td><td rowspan="5">정상가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 판정에 미반영</td><td>□ 양 호　□ 불 량
□ 일부 파손(찌그러짐)</td></tr>
<tr><td>- 완충장치 상태(차량)</td><td>□ 양 호　□ 불 량</td></tr>
<tr><td>- 유리창 파손 상태</td><td>□ 양 호　□ 불 량
□ 단순 파손(일부파손)</td></tr>
<tr><td>- 타이어 장착 여부 및 상태</td><td>□ 양 호　□ 불 량
□ 단순 불량(공기압부족)</td></tr>
<tr><td>- 등화장치 설치 상태</td><td>□ 설치　□ 미설치
□ 단순 파손(일부 깨짐)</td></tr>
<tr><td>첨부물</td><td colspan="3">□ 온라인 대상차량확인 시스템(escar.or.kr)이용자: 시스템에 등록된 동영상으로 갈음
□ 현장 확인 : 사진 4매(전・후・좌・우면)</td></tr>
<tr><td rowspan="2">판 정
결 과</td><td>정상 가동 여부</td><td colspan="4">□ 가　　□ 부</td></tr>
<tr><td>불가 사유</td><td colspan="2"></td><td>종합의견</td><td></td></tr>
</table>

위와 같이 조기폐차 대상(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합니다.

※ 온라인 검사비 기준 대상차량확인 검사비 14,000원 보조금 지원(지자체 직접 검사 등 무료 확인 시 지원 불가; 현장 확인 검사 시에도 온라인 검사와 동일한 14,000원 지원 및 현장 확인 검사 수수료가 14,000원 미만인 경우 실비 지급)

※ 비수도권 현장 확인의 경우는 보조금 청구서(별지4호) 제출시 납부한 수수료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수도권 현장 확인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전산 자료로 대체하여 증빙서류 미제출

년　　월　　일

확인자 :　　(인)

시장(지사) 또는 절차대행자 (인)

[문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

※ 주의사항

1. 조기폐차 대상자 선정 후➔성능검사를 받고➔폐차(자진말소)해야 함

2. 성능검사를 받지 않고 폐차 또는 자진폐차 외 말소(차령초과, 수출말소 등)시 보조금 지급 불가

4. 신차구매 의사가 있는 경우 반드시 확인
   - (총중량 3.5톤 미만) 폐차되는 차량이 5등급일 경우 중고차 구매시 추가 보조금 지급 불가
   - (총중량 3.5톤 미만) 폐차되는 차량이 4등급일 경우 신차 및 중고차(배출가스 1, 2등급) 구매
   ※ 배출가스 2등급 중고차는 2013. 1. 1. 이후 제작된 차량만 인정
   - (총중량 3.5톤 이상) 폐차하는 차량과 배기량 또는 최대 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차량으로 중고차·신차 구매 시 지원(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규격)

※ 추가 지원금은 '24.11.1.이후 신규 등록한 차량에 대해 지원 가능

※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도로용 3종은 규격)이 20% 범위 이내 일부 증가한 경우 인정

※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도로용 건설기계를 중고로 구매할 시 제작년월이 '17.10.1 이후 차량을 구매해야 추가보조금(100%) 지급 가능

5. 폐차하는 차량과 신규로 구매하는 차량의 제원 단위가 상이한 경우 정격 출력(ps)이 같거나 작은 경우(20%범위 일부 증가) 인정

6. 조기폐차 신청 전 대체차량(신차, 중고차)을 구매하는 당시 조기폐차 신청 대상차량을 소유하고 있어야 구매(추가) 보조금 지급 가능

7. 소유자 및 대상자동차 정보는 자동차등록증을 참고하여 정확히 기재

8. 우선순위 및 추가보조금 지급 대상자 증빙서류

가. **소상공인**: 중소기업확인서(구, 소상공인확인서) / [소기업(소상공인)] 표기만 인정
나.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발급)
다.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장치제작사가 발행하는 확인서

※ 차량 구매 지원금 지급 불가 사례

폐차 대상 차량	신규 구매 차량	지원여부
3.5톤 미만차량	3.5톤 이상(화물,건설)차량 구매시	X
3.5톤 이상(화물,건설)차량	3.5톤 미만차량 구매시	X
3.5톤 이상(화물)차량	폐차 차량의 배기량 또는 적재중량 초과시 (20% 범위 이내 일부 증가 인정)	X

[참고2] **[문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

인터넷 접수 방법

(순서1) 회원가입(배출가스 등급제)

①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https://www.mecar.or.kr/main.do) 접속

② 회원가입 클릭(홈페이지 오른쪽 상단)

일반회원 가입 →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동의 → 만 14세 이상가입 → 본인인증 클릭 → 인증수단 **휴대폰** 선택시 → 통신사 선택 및 약관 이용정보 동의 및 **시작하기** 클릭 → **문자인증** 클릭 → 개인정보 입력 → 확인 클릭 → 인증번호 6자리 입력 → 회원 아이디 등 개인정보입력 → 가입신청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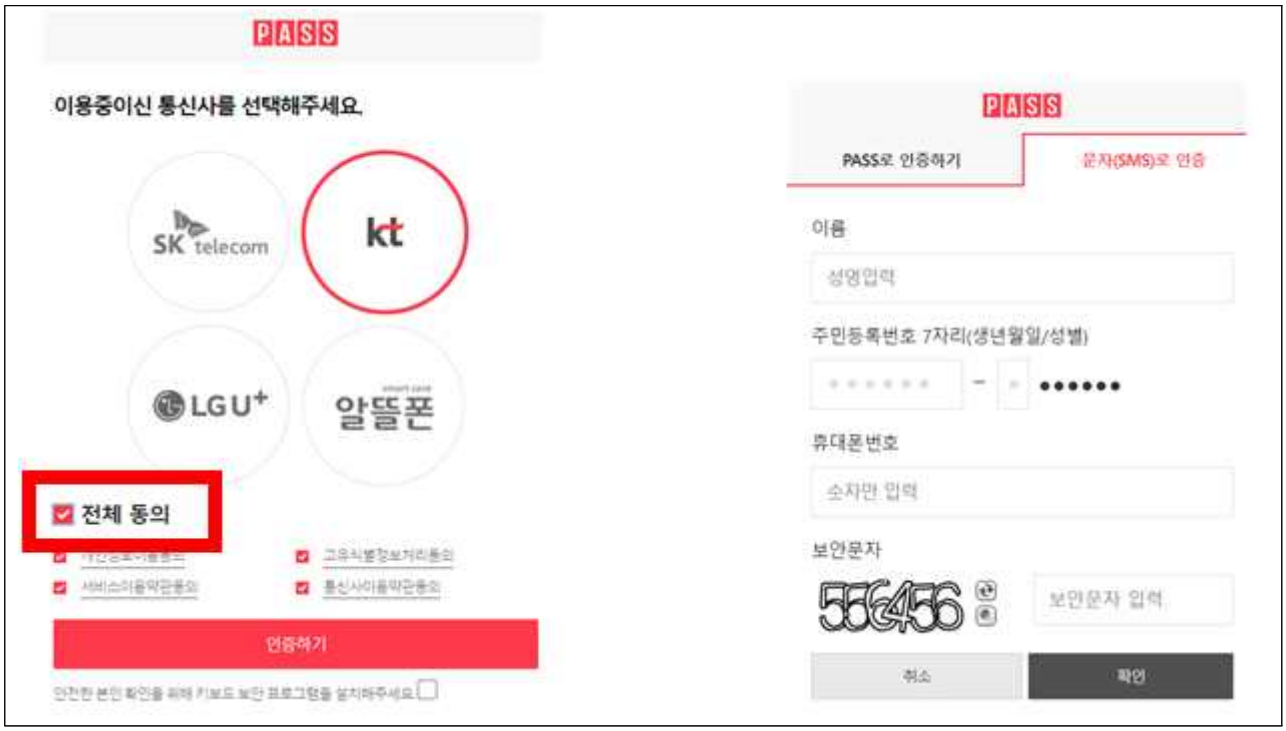

(순서2) 회원가입 후 조기폐차 저공해신청

< 접수기간 이전에 시스템에 기 등록된 차량은 기간내 재등록 하여야 함 >

◆ 저공해조치 신청(DPF/조기폐차/건설기계) 클릭 → 저공해조치 신청 구분 클릭 → 저공해조치신청 정보 입력(차량번호 기재 후 차량조회 클릭)

저공해조치방법(*) 조기폐차 클릭⇒ 저공해신청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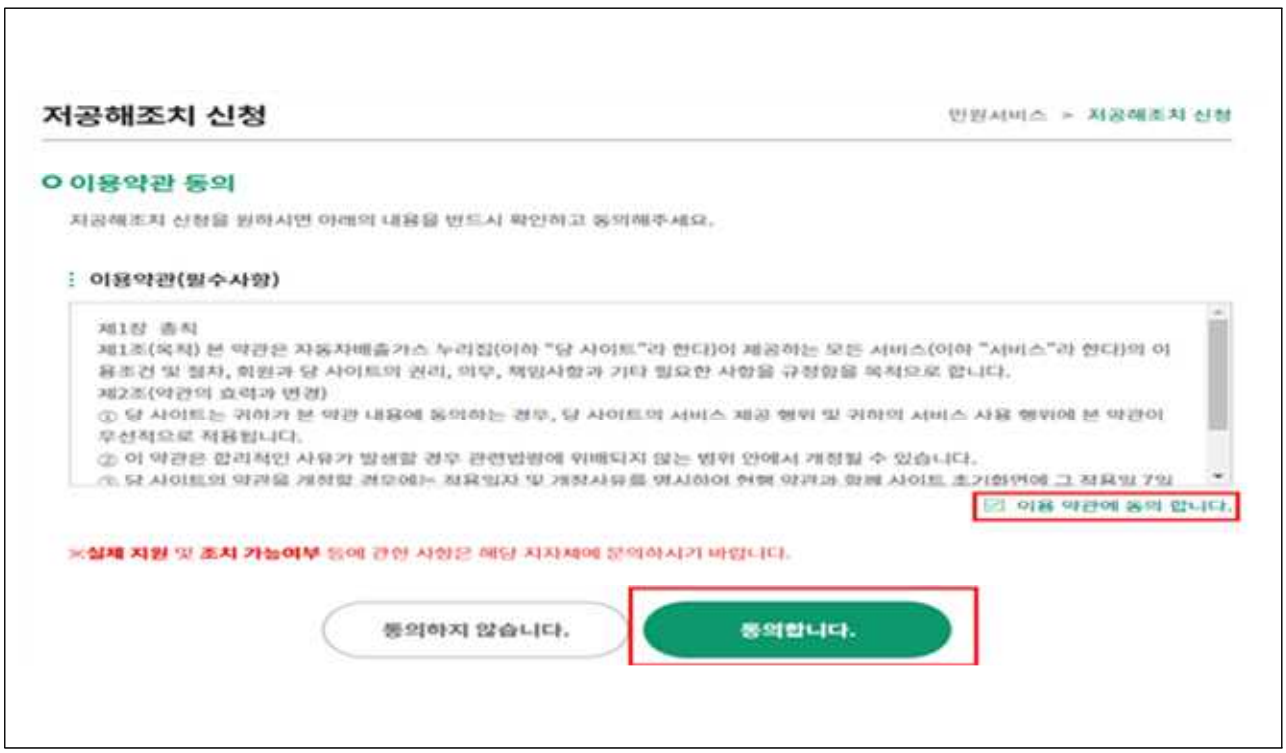

[문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

저공해조치 신청

인증서비스 > 저공해조치 신청

○ 저공해조치신청 정보입력

※신차등가 및 미개방장치 관련 경우 저감장치 부착 신청이 불가하며, 조기폐차 신청만 가능합니다.
※상세 지원 및 조치 가능여부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자동변수 + 120)
※저공해조치 신청 전, 지자체 공고문 내용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증빙서류는 지자체 공고문에 따라 별도 제출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표시항목은 입력 필수 사항입니다.

신청자명	
*휴대전화(대표자)	010
*자동차 등록번호	차량조회
	※ 차량조회버튼 클릭후 차량검색 차대번호링크를 선택하시면 신청정보가 자동입력됩니다.
차대번호	
*저공해조치 방법	○ 저감장치 부착 ◉ 조기폐차
취약계층 /소상공인	□ 취약계층 여부 파일첨부 선택된 파일 없음 □ 소상공인 여부 파일첨부 선택된 파일 없음 취약계층, 소상공인을 제외한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시 제출 시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파일로 제출 하여야합니다. 미제출 시 취약계층, 소상공인 적용 불가 (문의처 : 1577-7121) ※ 첨부서류는 하나의 압축파일(*.zip) 또는 PDF(*.pdf), 이미지(*.jpg, *.jpeg, *.png) 파일로 업로드 가능합니다.

차명	
연식	
소유자명	
주소	
신청지자체	
전화번호	[선택]
팩스번호	[선택]

본인은 지자체 공고문을 확인하였으며, 아래같이 차량에 대해 저공해조치를 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확인사항) 본인은 신청차량의 정보(배출가스 등급 및 저감장치 부착 여부 등)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신청차량 정보에 이상이 있을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 관련규정 : 환경부 고시 제2020-50호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조기폐차 접수 후 절차는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신청취소 저공해신청

개인	법인

※ 법인신청 방법

- 회원가입 : 회사직원이 일반회원으로 가입
- 차량신청 : 저공해조치 신청 클릭 ⇒ 개인정보수집 동의 클릭 ⇒ 차량조회 ⇒ **차량번호 조회 팝업창에서 법인으로 변경 후** 순서대로 진행
- 법인 사업자 번호 및 대표자 주민번호(7자리) 필수 입력

※ 파일 첨부 가능

① 저소득층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복지로 홈페이지 발급)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확인서, 차상위 자활급여 확인서, 차상위 장애인연금 · 장애수당 · 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발급)

※ 조기폐차 신청일1개월 이내 발급한 자료만 인정(공동명의 경우 모두 해당되야 인정)

② 소상공인

-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에서 발급
-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개인이 소유한 것도 인정, 공동명의 경우 1인만 소상공인 경우도 인정하되, 이 경우 나머지 공동명의 소유자에 대하여도 업종별 소상공인 연간 지원 대수와 한도를 적용 (소상공인 적용받는 소유자가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 차량을 연속으로 소유한 경우 인정)

※ 공동명의이면서 소상공인일 경우 **각각 신분증+ 소상공인확인서** 첨부해야 인정

- 법인이 소상공인인 경우 법인 차량에 대해서만 인정(법인 대표자가 소유한 경우 불인정)

③ 배출허용기준 증빙 서류(도로용3종 건설기계 해당)

- 2006년식 이후 건설기계는 유로3 or 유로4 확인서류를 제작사에서 발급 가능

[참고2]

[문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

차량 등급 조회

순번	구분	MECAR 화면
1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접속 www.mecar.or.kr (☏1833-7435) ❶ 등급조회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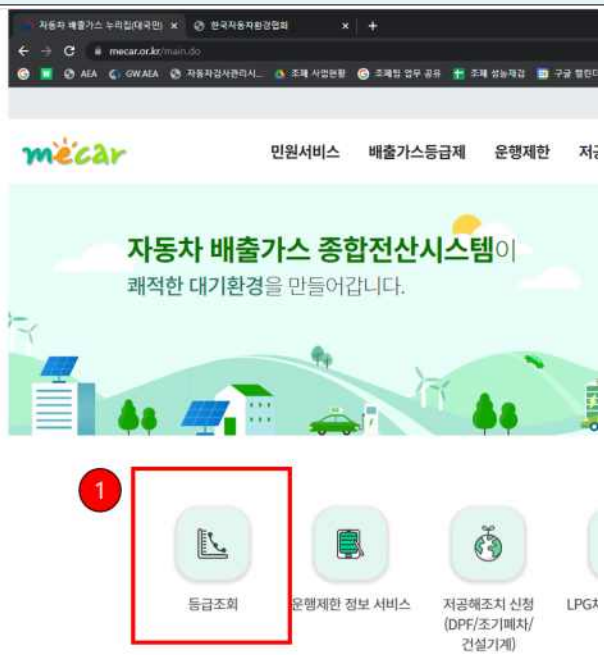
2	소유차량 등급조회에서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❷ 소유차량 등급조회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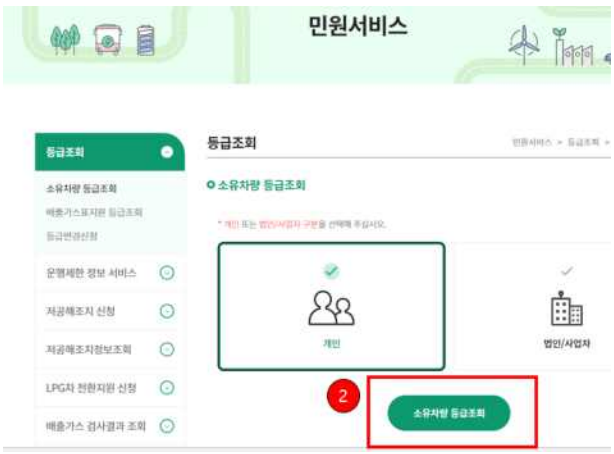
3	❸ 차량번호 입력	

4	❹ 소유차량 등급조회 클릭 ❺ 휴대폰 인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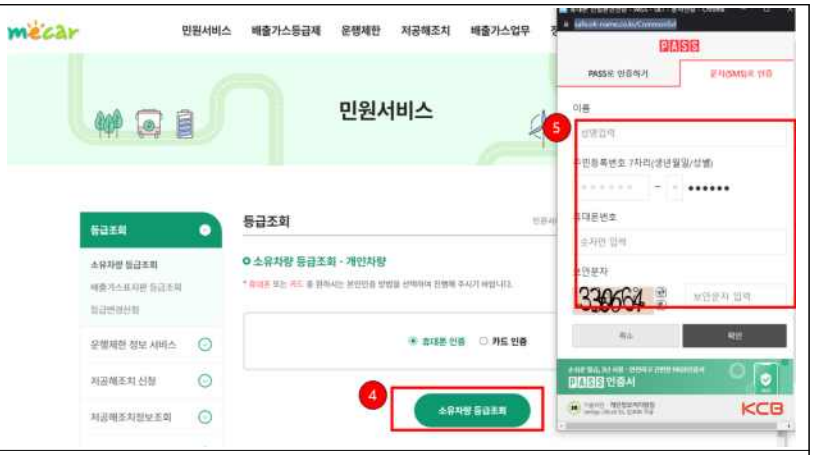
5	❻ 등급 조회 ※ 4, 5등급 조회	

[참고3] **[문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

차량 등급 조회

□ **준비사항 : 시스템에 접속하여 촬영 방법 등 매뉴얼을 숙지하고 핸드폰으로 차량 동영상(1분 이내)을 촬영하여 준비**

※ 차량 동영상 **전·후·좌·우·차대번호(또는 후면 번호판)·전진·후진** 등 1분 이내 촬영

※ 온라인 검사비용 14,000원은 폐차 후 보조금 지급시 전액 환급

유튜브 "**조기폐차 온라인 대상차량 신청 절차**" 검색 → **동영상**으로 쉽게 절차 확인 가능

※ 링크 : https://youtu.be/zKskqWmQYOU

구분	시스템 화면	사용 절차(방법)
이용 절차	시스템 로그인 (차 주) → 자료 (동영상) 업로드 (차 주) → 신청 정보 확인 및 가상계좌 안내 (협 회) → 검사 수수료 입금 (차 주) → 합격 여부 판정 (협 회)	
1 단계 (차주) 온라인 로그인		온라인 대상차량확인 시스템 바로가기 ① 차량번호, 신청자 성함, 휴대폰번호 입력 ※ 조기폐차 지급대상확인 신청서 작성 정보 ② 인증번호 전송 클릭 → 핸드폰으로 인증번호 전송 → 전송된 인증번호 입력 → 로그인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확인서 발급 이후 로그인 가능

구분	시스템 화면	사용 절차(방법)
2 단계 (차주) 온라인 로그인		① "신청 및 결과확인" 클릭
3 단계 (차주) 정보 확인		① 신청 내역 확인 → 동영상 등록 ② 차량 소유자 및 차량 정보 확인
4 단계 (차주) 동영상 업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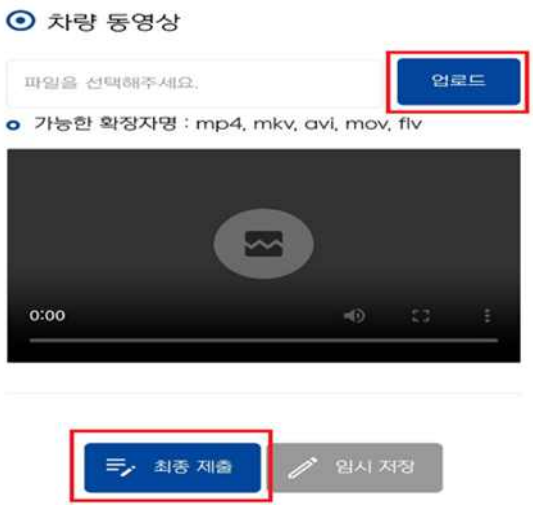	① 업로드 → 내파일 → 동영상 선택 → 최종 제출 ※ 제출 이후 진행상태→동영상 등록 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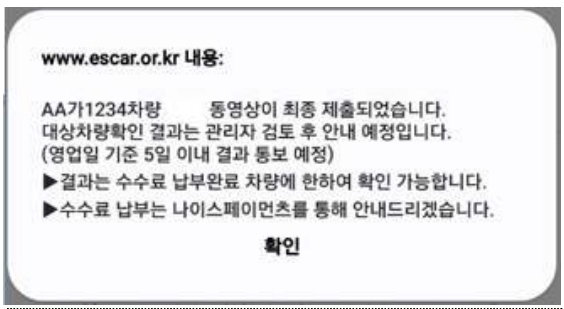 ※ 보조금 산정일로부터 60일이내 동영상 업로드 필수 ※ 조기폐차 최근 신청일 이후 촬영 된 동영상 이어야 함

<table>
<tr><th>구분</th><th>시스템 화면</th><th>사용 절차(방법)</th></tr>
<tr>
<td>5
단계
(협회)

합격
여부
판정</td>
<td>
<검사 합격 시> 결제 문자 발송(1661-0808)

[Web발신]
AA가1234 고객님, 안녕하세요?
(사)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에서 결제하실 내역 안내드립니다.
아래 URL로 접속하시면 상세 내역 확인과 결제진행이 가능합니다.

* 귀하께서 신청하신 조기폐차 차량의 대상차량확인 수수료 납부(가상계좌) 안내 입니다.

* 대상차량확인 결과는 수수료 납부 후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아래 URL로 접속하시면 가상계좌 확인과 결제진행이 가능합니다.

▶URL은 문자 수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확인 바랍니다.

https://web.nicepay.co.kr/smart/slo.jsp?
rid=WhiX2412197149

가맹점 상호: (사)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상품명: 온라인 대상차량 확인 수수료
금액: 14,000원
가맹점 대표전화: 031-689-3073

** 상기 메세지는 (사)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의 요청에 따라 나이스페이먼츠(주)에서 대행하여 발송하고 있으며,
수신내용에 대한 문의는 가맹점 대표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신자가 본인이 아니신 경우 삭제 부탁 드리며,
오발송으로 인해 혼선을 드린 점에 대해 정중히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td>
<td>
① 협회 담당자가 업로드된 동영상 검토
② 합격 여부 안내
※ 영업일 기준 5일 이내 결과 통보
1. 합격 : 대상차량확인 수수료(14,000원) 결제 요청 문자 발송
- URL은 문자 수신일로부터 7일간 유효
2. 불합격 : 카카오톡으로 불합격 사유 안내
- 사유 확인 후 동영상 재등록 필요
<검사 불합격 시>

</td>
</tr>
<tr>
<td>6
단계
(차주)

수수료
결제</td>
<td>

</td>
<td>
① 안내 문자 메세지 링크 접속 → 결제하기 → 전체 약관 동의 → 거래 은행 선택 →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 선택 → 가상계좌 발급

② 발급받은 가상계좌로 온라인 대상차량확인 수수료 입금(14,000원)
※ 안내받은 날로부터 1개월내에 결제 진행되어야 함

</td>
</tr>
</table>

[문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

구분	시스템 화면	사용 절차(방법)
7 단계 (차주) 검사표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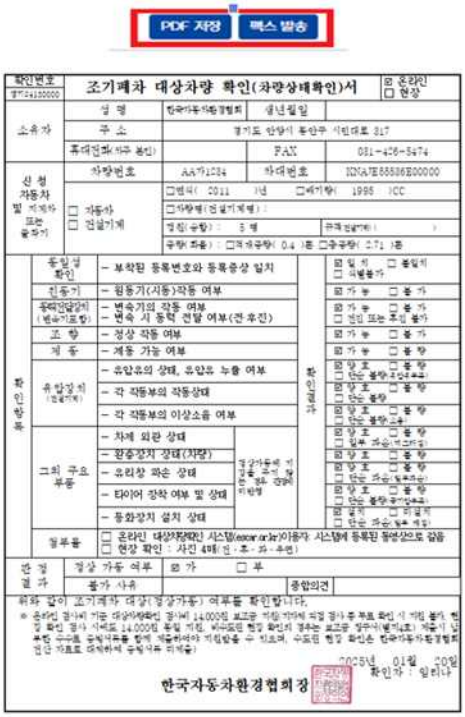 PDF 저장 팩스 발송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차량상태확인)서 한국자동차환경협회장	 [한국자동차환경협회] ▶AA가AAAA 차량의 대상차량확인 결과 조기폐차 "가능" 입니다. ▶대상차량확인서는 PDF저장 또는 팩스 전송이 가능하며, 이후 행정(폐차, 청구 등) 절차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 070-4353-2011, 031-689-3073(내선 1231) ESCAR바로가기 https://www.escar.or.kr/carOwnerCert.do ESCAR 바로가기 ① 대상차량확인 결과 안내 카카오톡 수신 후, 시스템 로그인(1~3단계 진행) ②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확인)서 →정상 가동 여부 "가" 확인 ※ 수수료 입금이 완료된 차량에 한해 대상차량확인 결과표를 확인할 수 있으며, PDF저장·팩스 발송 가능

[참고5]

자주 하는 질문(참고용)

◎ (질문) 4등급, 5등급 확인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 (답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https://www.mecar.or.kr/main.do 접속 후 확인 또는 국번 없이 114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다만,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의 경우는 제작사에서 발급하는 등급 인증서류를 요청하시면 확인가능합니다.(신청시 제출 필수)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을 통해 확인 할 경우 핸드폰 본인 인증이 필요

◎ (질문) 조기폐차 사업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 차량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Tier-1 엔진('04년 이전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 받은)을 탑재한 지게차 또는 굴착기가 사업 대상입니다.

◎ (질문) 조기폐차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① 여수시에 6개월 이상 연속으로 등록,
  ② 관능검사 결과 적합한 차량(검사기간 경과 시 불가),
  ③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서(차량상태)상 정상가동 판정,
  ④ 정부지원으로 저감장치나 저공해 엔진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⑤ 총중량 3.5톤 이상인 경우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가 기본적인 지원 대상입니다.

◎ (질문) 상품용 및 관용차량도 조기폐차 신청이 가능한가요?

- (답변) 상품용은 조기폐차 지원대상이며, **관용차량**은 민간보조 사업에 따라 **조기폐차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질문) 사망한 차주도 가족이 신청 가능한가요?

- (답변) 사망한 차주는 조기폐차 신청이 불가합니다.
  다만, **상속이전** 등을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 (질문) 조기폐차 보조금은 얼마 나오나요?

- (답변) 총중량 3.5톤 미만 기준으로 5등급(상한액 300만원), 4등급(상한액 8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공고문(보조금 지원금액 및 지원율)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차종, 형식, 연식 등에 따라 지원금액은 다르며, **무조건 상한액을 지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 **(질문) ① 보조금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② 보험 증서에 차량가액과 비교할 때 지원 금액이 적은거 같은데 기준이 다른가요?

- (답변) ① 자동차 기준 당해연도 1분기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표의 기준하여 기본형으로 보조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또한, 같은 차종이라도 연식, 형식 등에 따라 보조금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② 보험개발원의 차량가액은 개인용자동차보험 등 자기차량손해계약을 체결할 때 적정한 보험가액을 정하고, 보통약관에 따라 손해액을 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것이며, 소유자가 가입한 보험 증서에 기재된 차량가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질문) ①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② 받지 않고 폐차를 실시하면 보조금 지원이 되지 않나요?

- (답변) ① 대상자 선정 후 중고자동차 성능·상태검사를 통해 정상가동 판정을 받아서 확인하여야 하며, ②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을 받지 않고 폐차할 경우 보조금 지원이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 **(질문) 대상차량확인 보조금(14,000원)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 (답변) **상한액과 관계없이 수수료 14,000원를 지원합니다.**
다만, 지자체에서 직접 대상차량확인을 실시하는 등 무료로 확인한 경우 수수료 지원이 불가하며, 비수도권 현장에서 확인하는 경우 보조금 청구서(별지4호) 제출시 납부한 수수료 증빙서류등을 첨부하여야 지원 가능합니다.

※ 대상차량확인 시스템(www.escar.or.kr)외의 방법으로 확인받을 경우 차주에게 지원하는 비용 14,000원/대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직접 부담해야합니다.

◎ **(질문) 차량 고장, 사고 등으로 정상 가동이 불가능 한데 조기폐차 가능한가요?**

- (답변) 조기폐차는 **정상가동이 되는 차량이 지원대상**이며,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좀 더 일찍 폐차하는 차량에 대해 보조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경미한 파손 등 정상가동에 지장을 주지 않은 차량으로 확인되는 경우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질문) 사용본거지 기준 "여수시"로 조기폐차를 신청하여 지급대상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다른시"로 이전한 경우 보조금 청구는 어디로 하나요?**

- (답변) 보조금 청구 기준(추가지급 청구 포함)은 신청 후 "노후차량 조기폐차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급한 지자체로 보조금 지급 청구하시면 됩니다.

[문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

◎ **(질문) ①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② 받지 않고 폐차를 실시하면 보조금 지원이 되지 않나요?**

- (답변) ① 대상자 선정 후 중고자동차 성능·상태검사를 통해 정상가동 판정을 받아서 확인하여야 하며, ②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을 받지 않고 폐차할 경우 보조금 지원이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 **(질문) 공동명의(A, B)로 폐차 후 단독(A)명의로 차량 구매 시 추가 지원이 되나요?**

- (답변) 당초 명의자 "A"가 포함된 경우로 보아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보조금 지원은 등록된 "A" 명의자에게 지원 가능 합니다.("B"의 위임장 제출 필요)

◎ **(질문) 공동명의일 경우 제출 서류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최초 신청시 공동명의자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금 청구시에는 위임장,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가능)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질문) 조기폐차 후 추가 구매 지원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총중량 3.5톤 미만 기준으로 폐차 후 배출가스 1,2등급 신차 또는 중고차(5등급은 중고차 지원불가)를 구매하여 등록(계약서 불가)한 경우 차량기준가액의 30%, 또는 50%를 추가 지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바랍니다.

◎ **(질문) 조기폐차 신청 후 신차 출고 지연 등으로 2개월 이내에 폐차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답변) 신차 출고 지연 등으로 불가피하게 폐차를 할 수 없는 경우 보조금 청구 기간 전에 여수시에 사전 문의하여 기간 연장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 **중고차 구입은 청구 기간 연장이 불가능** 하며, 신차 출고 지연은 자동차 계약서를 지자체에 제출

◎ **(질문) 청구서를 제출했는데 보조금 지급은 언제 되나요?**

- (답변)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추가 구매 청구서 포함) 접수일로부터 약 한달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신청 물량이 많을 경우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 **(질문) 저감장치 장착불가 추가 지원을 받기 위해 별도로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 (답변) 저감장치 장착불가 지원은 5등급 차량 중 3.5톤 미만 차량만 해당되며, 통상적으로 별도 서류 제출 없이 확인합니다.

◎ **(질문) 위·수탁 계약차량인데 실질적인 소유자(개인)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네. 위·수탁 계약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실질적인 소유자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